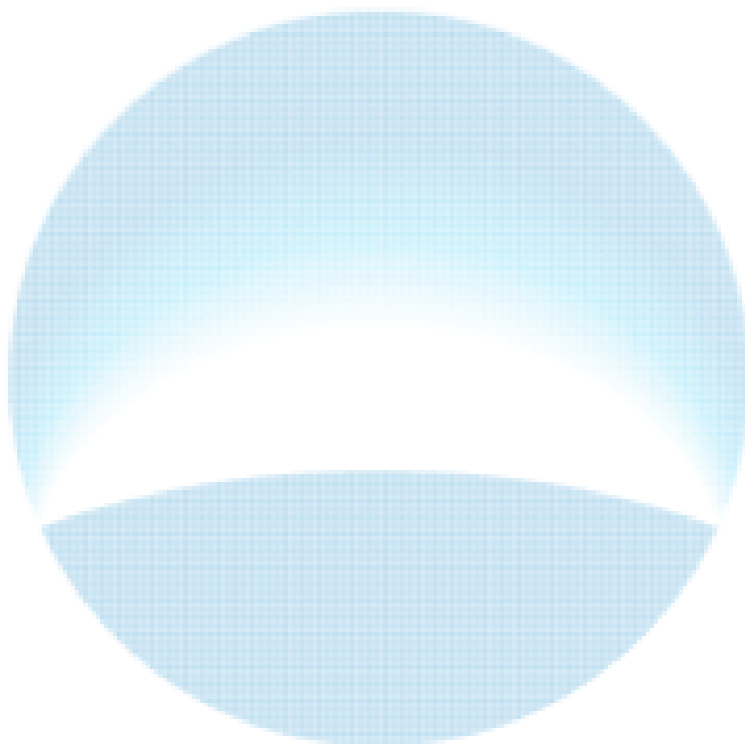


공매부동산 매매계약서

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509외 16필지
해운대비치골프앤리조트 제110동 203호



매도인(甲)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
매수인(乙)

공매부동산 매매계약서

본 공매부동산은 2025년 04월 17일 온비드, 우리자산신탁(주) 홈페이지 공매공고에 따라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 우리자산신탁(주)(이하“甲”이라 함)과 매수인 (이하“乙”이라 함)는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.

매도인(甲) : 우리자산신탁(주)

매수인(乙) :

○ 부동산의 표시

건물의 표시	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을 연화리 509외 16필지 해운대비치골프앤리조트 110동 203호			
대지의 표시	토지의 표시 :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을 연화리 509번지 대지권의 종류 : 소유권			
각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			각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	
건물의번호		구조	면적(m ²)	대지권의 비율
층	호			
2	203	철근콘크리트조	201.27	325787.6분의 771.35

- 다 음 -

제1조 (매매대금 및 대금지급 방법 등)

- ① 甲은 위 표시 부동산을 일금 원정(W ,VAT포함)에 乙에게 매도한다.
(단위: 원)

공 급 가 액			부가가치세	계 (매매금액)
대지가격	건물가격	소 계		

- ②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각각 지급하기로 한다.

구 분	공급가격	지급일자
계약금	W-	
잔 금	W-	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합 계	W-	VAT포함

- ③ 乙이 제1항에서 정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, 기 납부한 계약금(예금이자 포함)은 甲에게 귀속한다.

- ④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장소는 반드시 아래 지정계좌에 현금으로 송금하기로 한다.

[지정계좌 :

우리은행, 예금주: 우리자산신탁(주)]

제2조 (소유권 이전) ① 乙이 제1조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乙은 甲의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(말소)에 필요한 서류작성에 즉각 협조하여야 하며, 이를 지연하므로 인하여

발생하는 책임(권리제한사항 등)은 乙이 부담한다.

- ② 소유권 이전절차에 관한 등록세, 인지대 등 일체의 비용은 乙의 부담으로 한다.
- ③ 입찰일 기준으로 입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까지 공매부동산의 제한권리는 乙의 책임으로 말소하여야 하고 이를 말소하지 못하는 경우 乙이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본다.
- ④ 공매부동산 소유권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乙의 책임으로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.

제3조 (하자 담보책임 및 위험부담) ① 乙은 매매목적물의 권리와 현 상태 및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조사 검토한 후 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며 甲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- 1. 공부 및 지적상의 흠결이나 환지로 인한 감평, 미등기 건물, 행정상의 규제 등으로 인한 구조, 수량의 차이
 - 2.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므로 인하여 받는 권리의 제한
 - 3. 등기부상 표시내용과 현상의 차이
 - 4. 기타 제3자의 권리
- ② 이 계약체결일 이후에 매매목적물의 공용징수, 도시계획의 변경, 건축제한, 도로 편입 등 일체의 공법상의 부담이 부과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乙의 부담으로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乙은 하자담보책임, 매도인의 담보책임, 기타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·형사상 책임을 甲에게 묻지 않는다.
- ④ 소유권이전시까지 공매물건에 대한 제한권리(근저당, 가처분, 전세권, 지상권, 가압류, 압류, 유치권등)의 말소 등 모든 법률적 사실적 제한사항 및 권리관계는 乙이 인지하고, 매매계약서상 乙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, 乙은 이를 이유로 일체의 이의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.

제4조 (명도 또는 인도책임) ① 명도 또는 인도 책임은 乙이 부담하기로 한다.

- ② 乙은 제1항의 명도 및 인도책임조건에 대하여 甲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.
- ③ 공매부동산에 표시되지 않은 물건(건물, 공작물 및 동산등 일체)과 제3자가 시설한 물건 또는 변경사항 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명도, 철거, 수거, 인도 책임 및 비용부담은 乙이 한다.
- ④ 본 계약체결 이후 매매 목적물과 관련하여 기존 이해관계자들과의 분쟁 및 민원사항 등은 乙의 책임으로 해결토록 하여야 하며, 그 정리결과를 이유로 甲에게 어떠한 권리주장이나 요구(대금지급의 조정 등)를 할 수 없다.

제5조 (제세금 등) 공매부동산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전기료 등 각종부담금 비용 일체(연체료 포함)는 소유권이전과 관계없이 乙이 부담하기로 한다. 단, 아래 각 목의 경우는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.

1. 특히 매매대금 완납일 전후를 불문하고 매도인(당사)은 전유 및 공용 부분을 막론하고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수 있는 공매부동산의 관리비, 수도, 가스, 전기료, 각종 부담금 등 제세공과금을 책임지지 않으며 매수인이 현황대로 인수(승계)하여 매수자의 부담으로 책임지고 처리하는 조건의 매매이므로, 乙은 공매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일자 기준의 관리비 전액을 납부한 후 관리비완납증명서를 甲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이와 관련하여 乙은 甲에게 관리비 및 구상권 청구 등 민·형사상 일체의 이의 및 민원을 제기하지 못한다.

2. 공매부동산에 대한 甲을 납부의무자로 하는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, 교통유발부담금은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,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도인(당사)가 매매대금에서 정산 납부 하기로 한다.[단, 2021년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甲에게

지급 책임이 없으며, 乙의 책임으로 한다. 甲이 부담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2021년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일 경우, 甲은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관할관 공서가 甲에게 서면으로 납부요청을 하여 甲에게 물적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만 신탁재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기로 한다.]

제6조 (계약의 해제) ① 甲 또는 乙이 매매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각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② 甲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공매공고 등의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.

③ 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침해(가압류,가처분,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등)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이행 또는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다고 甲이 판단하는 경우,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고 甲은 乙이 기 납부한 매매대금을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에 대하여 乙은 甲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.

④ 본조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甲의 위약으로 이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甲은 지급받은 매매대금(이자없이 원금)만을 乙에게 반환하고 乙의 위약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甲에게 귀속된다.

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계약의 해제(무효)는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제7조 (변경사항의 신고) 乙은 이 계약 체결 이후 乙의 상호 및 주소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甲에게 신고하기로 한다. 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乙의 부담으로 한다.

제8조 (부동산거래의 신고)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(시행령,시행규칙)에 따라, 乙은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,군,구청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책임지고 해야 하며, 미신고 또는 불성실신고에 따른 과태료처분 등 모든 책임은 乙이 지기로 한다.

제9조 (기타사항) ①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,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,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,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.

② 본 부동산의 잔금완납일 이후 甲을 채무자(또는 제3채무자)로 하는 권리제한사항(가압류, 가처분, 압류등)이 발생시에는 乙이 책임지고 처리기로 한다.

③ 입찰참가자준수규칙, 공매공고 내용은 계약의 일부가 된다.

④ 甲, 乙 쌍방 간에 분쟁 발생 시 부산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.

제10조 (임대차 및 인도·명도책임)

① 공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전입세대열람(2025.04.02. 기준) 및 상가건물 임대차열람(2025.04.01. 기준) 결과, 별도의 전입내역 및 임대차현황은 없으며, 甲이 신탁등기 이후 임대차동의한 건은 없으나, 기준일 이후로 甲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임대가 되어 있을 수 있다. 아울러, 본 내용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완전히 표시하는 수단이 아닌 참고사항일 뿐 실제상황과 다를 수 있으므로 乙이 공매응찰(매매계약) 전에 직접 乙의 책임과 비용으로 실제 임대차 권리관계를 관할주민센터(세무서) 전입세대열람(등록사항 열람) 및 탐방조사 등의 방법으로 사전 조사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무를 판별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며, 이에 대한 판단 및 확인 책임은 乙에게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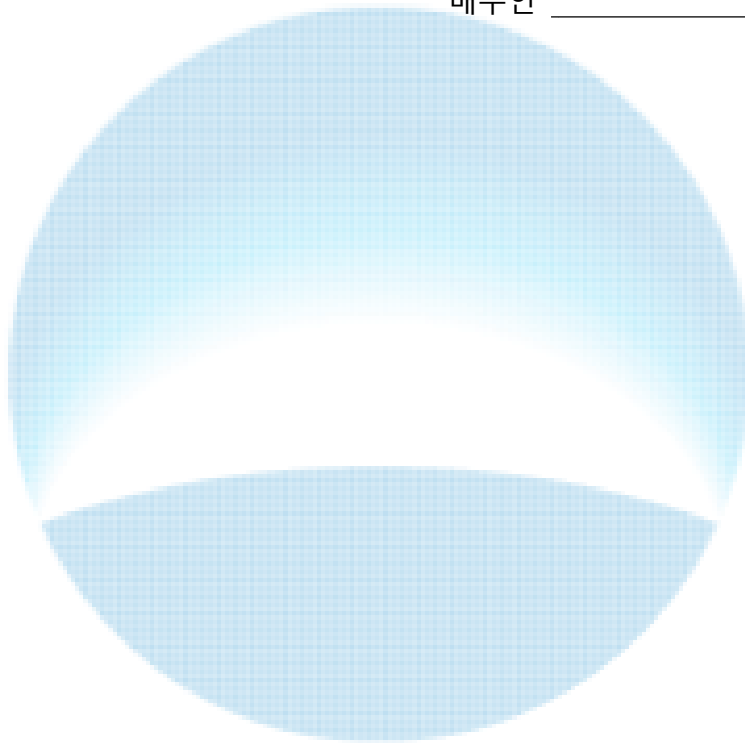
② 명도책임은 乙에게 있으며, 임대차보증금은 乙이 (승계하여)책임지는 조건이다. 乙은 매매목적

부동산을 현존상태로 매수하기로 하며, 매매목적부동산을 직접 확인 후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. 乙은 매매부동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(그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임차인이 甲에게 청구하는 경우 포함), 그 임대차보증금과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여 그 지급을 전적으로 乙이 책임지고 甲을 면책시켜야 한다.

③ 공매목적 부동산에 점유권, 임차권, 유치권, 영업권, 사용권 등 일체의 권리제한사항이 있더라도 권리제한사항의 해결 및 소멸에 필요한 일체의 책임 및 비용은 乙이 부담한다.

④ 본 조 제①항 내지 ③항의 권리제한사항을 乙은 충분히 인지하고 본 매매계약을 체결하며, 해당 권리제한사항으로 인하여 乙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乙은 甲에게 매매목적부동산의 낙찰취소, 매매계약 해지(해제), 취소, 무효(이하 용어불문) 및 매매대금의 감액 또는 반환, 매매대금 납부기한 연장 등 민·형사상 일체의 이의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.

매수인은 본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확인함
매수인 _____ (인)



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.

※ 개인정보 수집 . 이용 . 제공 동의

[관련 법 조항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 제1항 제1호, 제17조 제1항 제1호, 제24조 제1항 제1호]

- ① 본 수의계약에 따른 매수자(대리인 포함, 이하 같음)의 개인정보는 공매 및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목적 물의 원만한 소유권이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당사에 제공 되었는데, 매수자는 당사가 공매 및 매매계약의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, 이용하고 관련 법령에 의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상의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 (☒ 동의 ☐ 미동의)
- ② 당사에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매수자의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, 국내거소신고번호 포함), 연락처 등이며 공매 및 매매계약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당사에 의하여 수집, 관리되며 공매 및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 후 10년까지 처리되는 것에 대하여 매수자는 동의합니다. (☒ 동의 ☐ 미동의)
- ③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는 공매 및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 사항으로 이에 동의하여야만 입찰 및 매매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입찰 및 매매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.

상기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. 이용 . 제공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

2025. . .

매도인(甲)

상 호 : 우리자산신탁(주)
법인등록번호 : 110111 - 2003236
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, 13층
대 표 자 : 김 범 석(지배인: 김해진) (인)

매수인(乙)

생 년 월 일 :
주 소 :
성 명 :